

2016년도 포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11. 24.~ 12. 2.(6일간)
- 감사분야 : 2013년 12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4건	14건(24명)	2건(2,500천원)	6	8	-	9	15	-	2,50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징계처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징계위원회 구성) 현장대응단 소속 지방소방교 ○○○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16.01.06(토). 23:27분 단속에 적발되어 징계위원회를 개최(2016.03.12.)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심의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인 현장대응단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 (결재누락 등) 징계의결요구서를 통보 받은 징계위원회에서는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여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일자과 접수등록번호를 적어야 함에도 접수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장의 결재를 누락하였으며,

- (의결서 지연통보) 2016.03.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3월”로 의결되어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통지하여야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일 지연하여 2016.03.11. 통보
- (기타 행정절차)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신청)서를 심의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공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증만 받아 전달 하였으며, 또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징계의결 결과의 수용여부 또는 재심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징계의 집행은 ‘임용’ 사항으로 자체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하고 당사자에게 바로 징계 처분 사유설명서 교부로 갈음하는 등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

❖ 【관련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제15조(제척 및 기피) 같은 규정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2016년도 징계업무 편람(인사혁신처)

○ (예산·회계) 시설공사 계약체결 미흡 및 산재·고용보험 가입 누락

- (계약체결 미흡)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이 되는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센터·○○지역대 방수공사” 계약 체결.
-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계산 및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발주부서에서 보험료를 대행하여 낼 수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공사대금 지출 시에 원수급자가 발주부서에 제출한 보험료 완납증명서에 의하여 당해 공사현장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토록 독려하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함.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124조(계약의 체결)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적용기준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 (재난대응·안전)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업무 소홀

-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9조(안전검사)에 의하면 공기호흡기 용기의 재검사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포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 업무담당자 지방소방□○○○ 등 2명은 공기호흡기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맞추어 실시해야 함에도 2013.12.1. ~ 2016.10.30.까지(감사기간) 짧게는 28일에서 길게는 1794일 까지 177개의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제조 후 경과연수 15년이 넘으면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62개의 용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9조(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 (예방·민원) 소방특별조사 업무 소홀

- 소방특별조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A고시원은 영업주가 변경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수범사례 1 직원간 소통·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운영

□ 추진배경

-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의 요구
- 직원 상호간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해 소통의 부재발생
- 서장님 지시사항(현장활동 팀워크 향상방안 강구)

□ 추진개요

- 기 간 : 2016년 4월 ~ 6월 (3개월)
- 대 상 : 전직원 (내·외근부서 30개팀)
- 방 법
 - 각 팀별 토론으로 소통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 자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소통의 장」추진 운영

□ 추진결과

- 기간 중 내·외근 부서 총 28개팀 25회 운영
 - (힐링)자연체험(바닷가 산책, 올레길 투어, 산림욕 등)
 - 스포츠(수상레저, 자전거) 및 문화활동(영화, 야구)
 - 청림유적지 및 명승지 탐방 등
- 운영 우수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기대효과

- 직원 간 소통으로 하나 된 직장분위기 조성
- 팀워크 향상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활동 기대

수범사례 2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 추진개요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등 소방민원 수요 증가
- 관계인들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필요
- 업무담당자(특별조사/자체점검) 및 관할센터 전문교육 실시 필요

□ 추진경과

- ('15년)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특수시책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및 부수신기 연계 점검 방법 교육
 - 기타 소방시설 전기분야 계통 및 설치 기준 등 교육
- ('16년)점검기구 대여 창구 및 실무교육장 운영
 - 소규모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 자체점검 매뉴얼 및 관련서식 작성 지도·안내

□ 추진결과

- ('15년)각 센터별 순회교육 실시 및 민원인 실습교육 상시운영
- ('16년)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수행 지원 대책 추진
 -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안내 및 배포
 - 소규모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무 교육장 운영
 - 소방관서 점검기구 무료대여 창구 운영



자체 제작한 실무교육장

□ 기대효과

- 소방민원 수요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검사업무 전문성 강화
-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 전문화

수범사례 3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이벤트

□ 추진개요(배경)

- 소방공무원 주체의「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홍보는 제약성과 한계성 있어 개인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함.

□ 세부계획

계 획	내 용
이벤트 공고	- 소방서, 시청, 경찰서 등 홈페이지 및 플래카드 이벤트 공고 ※ 이벤트 시행 15일 전 공고 - 차량 이동량이 많은 7월(휴가철), 9월(추석) 시행
이벤트 응모	- 개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의 글 게재 - 홍보내용 증빙자료(링크, 스캔, 기타자료) 포천소방서 홈페이지에 응모
당첨자 선발	- 해당 월 1일 0시부터 홈페이지에 응모한 선착순 10명 선발 ※ 선발제외 : 중복당첨자, 불순 및 허위 내용게재자 등
소화기 증정	- 소방서장 직접 시민에게 소화기를 전달하여 소방 이미지 제고 - 「소방차 길 터주기」요령지도 및 시민의 생각 청취

□ 추진결과

- 한달간 400여명 시민참여(응모)
 - 포천소방서 자체 심의회 개최 10명 당첨자 선정
 - ※당첨자 10명 휴대용 소화기 증정

□ 기대효과

-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소방차 길 터주기」홍보 효과
-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한 소방이미지 제고 및 공감대 형성